#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5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소병훈・이성윤・정춘생

장철민 • 박지원 • 윤종군

이재관 • 전진숙 • 안태준

박 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 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 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로,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피해자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또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란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가정폭력범죄로" 를 각각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동 거(과거에 동거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친족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이나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교제(과거에 교 제 관계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또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10. "강압적 통제행위"란 상대방에게 위협을 동반한 강압 통제를 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독립성과 표현, 이동,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상대방의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로 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가정폭력 행동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동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
- 2.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및 제286조의 죄
- 3.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죄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항제3호의 죄

제4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가정폭력피해자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의"로하고, 같은 조 제4항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관계 폭력 보기를"로, 관계 폭력 범죄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각각 "가정

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정 폭력행위자·피해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피해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상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인"을 "가정폭력등행위자인"으로,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 행위자가"로,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가"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범죄로서"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서"로,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또는 친밀

한 관계 폭력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정폭력범죄와"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와"로,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 죄에"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자를"로 하다.

제14조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 범죄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 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인"을 "가정폭력등행 위자인"으로 한다.

제19조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가정폭력 범죄의"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로 한다.

제23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25조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26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 다.

제28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

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등행위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한다.

제31조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나"를 "가정폭력등행위자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 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각각 "가정 폭력등행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 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42조 중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 외의"로 한다.

제44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에"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47조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가정폭력행위자의"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을 "가정폭력등행위자를"로 한다.

제55조의5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가"를 "가정폭력등행위자가"로 한

다.

제55조의6제1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5조의8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한다. 제58조제5항 중 "가정폭력행위자와"를 "가정폭력등행위자와"로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정폭력등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는" 자는"을 "가정폭력등행위자는"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를"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특례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제1조(목적) ----가정폭력 또는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 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가정폭력 또는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피해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1.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 또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를 말한다. 수반하는 행위----. 2.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사 <신 설> 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동거(과거에 동거했던

- <u>2.</u> (생 략)
-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파. (생 략)
-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 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5. "피해자"란 <u>가정폭력범죄로</u>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6. "가정보호사건"이란 <u>가정폭</u> <u>력범죄로</u> 인하여 이 법에 따 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

사람을 포함하고 친족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이나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교제(과거에 교제 관계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또는 강압적통제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 4.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란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서----. 가. ~ 파. (현행과 같음)
- 5. "가정폭력등행위자"란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
- 6. -----가정폭력 또 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
- 7.
   -----가정폭

   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

   죄로----
  - <u>8.</u> -----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 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삭 제> 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 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 한다.

<신 설>

<신 설>

8.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

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 9.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10. "강압적 통제행위"란 상대 방에게 위협을 동반한 강압 통제를 가함으로써 상대방으 로 하여금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독립성과 표현, 이동,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상대방의 일상생활 유지에 상 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되는 행위를 말한다.

11. (현행 제8호와 같음)

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7 병과) ① 법원은 <u>가정폭력행위</u> <u>자에</u>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 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가정폭력등행위
자에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에
③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2. (생 략)
-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⑦ (생 략)

<신 설>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1.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행동의-----
  - 2. (현행과 같음)
  - 3. ----가정폭력등행위자의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u>가정폭력범죄를</u> 알게 된 경우 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u>가정폭력범죄를</u>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 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1. 「형법」 제260조제1항・제2</u>
<u>항의 죄</u>
2. 「형법」 제283조제1항·제2
<u>항 및 제286조의 죄</u>
3. 「형법」 제307조 및 제309
조의 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4조(신고의무 등) 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
<u>력 범죄를</u>
②
가정폭력 또는 친밀
한 관계 폭력 범죄를
1. ~ 8.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u>가정폭력범죄를</u> 알게 된 경우에는 <u>가정폭력피해자의</u>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u>가정폭력</u>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u>가정폭력범죄에</u> 대한 응급 조조치) 진행 중인 <u>가정폭력범죄</u>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u>가정폭력</u>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생 략)
- 2. 피해자를 <u>가정폭력 관련 상</u> <u>담소</u>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u>
관계 폭력 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
력 피해자의
4
<u>가정폭력</u>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제5조(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u>
계 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
치) <u>가정폭력 또는 친밀</u>
한 관계 폭력 범죄에
1 <u>가정폭</u>
력등행위자·피해자의
1의2. (현행과 같음)
2 <u>가정폭력 또는</u>
치믹하 과계 폭력 과려 상담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 당한다)

3. ~ 5. (생략)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u>가정</u>
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u>가정폭</u>
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u>가정폭</u>
력행위자와 공동으로 <u>가정폭</u>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u>가정폭</u> <u>력행위자가</u>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생 략)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u>가정폭력범죄를</u>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u>소</u>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u>가정</u>
<u>폭력등행위자를</u>
<u>가정폭</u>
력등행위자인 <u>가정</u>
<u>폭력등행위자와가</u>
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H죄를
<u> </u>
가정폭
 력등행위자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u>가정폭력 또는</u>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제8조(임 사는 <u>가정폭력범죄가</u>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관계 을</u> 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u>가정폭력행위자가</u>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u>가정폭력</u>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 제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u>가정폭력범죄</u> 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8소(임시소지의 정구 등) ① -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u>
관계 폭력 범죄가
②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u>가정폭력 또</u>
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③ • ④ (현행과 같음)
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u>가정폭력 또는</u>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가
전 = 인 전계 즉즉 합니기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7 검사는 <u>가정폭력범죄로서</u> 사건 의 성질·동기 및 결과, <u>가정폭</u>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 ②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u> 제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u>
관계 폭력 범죄로서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에는
<u>&lt;삭 제&gt;</u>

<삭 제>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 제>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제10조(관할) ①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 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생 략)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 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 에 송치할 수 있다.

1110-( [ [ [ ] ]
가정폭력등행위자의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정폭력 또는 친밀</u>
한 관계 폭력 범죄와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u>
<u>관계 폭력 범죄에</u>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u>가정</u>	제12조(법원의 송치) <u>가정</u>
<u>폭력행위자에</u> 대한 피고사건을	폭력등행위자에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	
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	
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송치 시의 <u>가정폭력행위</u>	제13조(송치 시의 <u>가정폭력등행</u>
<u>자</u>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위자 처리) ①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	
는 경우 <u>가정폭력행위자를</u> 구	<u>가정폭력등행위자</u>
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	<u> </u>
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	
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ㆍ군에서는 24	
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	
서는 48시간 이내에 <u>가정폭력</u>	<u>가정폭력</u>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	<u>등행위자를</u>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	

<u>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제29조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4조(송치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u>가정폭</u> <u>력행위자의</u> 성명, 주소, 생년월 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 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15조(이송) ① (생 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u>가정폭력</u>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u>가정폭력범죄에</u> 대한 공소
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14조(송치서)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정폭</u>
력등행위자의
제15조(이송)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정폭력등
<del></del> 행위자와
·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7110±(±±/1±°1 ± 7)
기 고 프 터 드 체 이 기 세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u>폭력 범죄에</u>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u>가정폭력범죄의</u>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
<u>력 범죄의</u>
②
<u>가정폭력등행위자</u> -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 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 (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 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

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u>가정폭력범죄의</u>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③
	<u>가정폭력등행위자인</u>
ارح	10フ/フォー オーコ カー HLをL
세	19조(조사·심리의 방향)
	가정폭
	<del></del> 력등행위자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u>
	계 폭력 범죄의
제	
제	 
제	  21조(조사명령 등) ①

의 장에게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u>가정폭력범죄의</u>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 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 리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 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

<u>가정폭력등행위자</u>
<u>가정폭력 또는 친밀한</u>
관계 폭력 범죄의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세22호(전단기리 리션 호회) ① 
<u>가정폭력등행위자</u>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정하여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u>가정폭력행위자가</u>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 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u>가</u> 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 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 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 장에는 <u>가정폭력행위자의</u>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 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 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생 략)

<u>가정폭력등행위자</u>
 ②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제25조(긴급동행영장)가
<u>정폭력등행위자가</u>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원은 <u>가정폭력행위자의</u>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 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u>가정</u> 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인) ① <u>가정폭력행위</u> <u>자는</u>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u>가정폭력행위자의</u>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생 략)
- ④ 법원은 <u>가정폭력행위자</u>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u>가정폭력행위자</u>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u>가정폭력행위자에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u>가정폭력행위자의</u>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

<u>가정폭력등행위자</u>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u>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u>
 1. ~ 6. (현행과 같음)
②
<u>가정폭력등행위자</u>
<u>가정폭력등행위자</u>
③ (현행과 같음) ④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가정폭력등행위자가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u>가정폭</u> 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 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 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 게 <u>가정폭력행위자를</u>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 ⑨ (생 략)
- ① <u>가정폭력행위자</u>, 그 법정대 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 ② (생 략)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 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 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u>가</u> 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 야 한다.
- ② (생략)

··
<u>가정폭</u>
<u>력등행위자에게</u>
<u>가정폭력등행위자를</u>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u>가정폭력등행위자</u>
<u>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u>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u>가정</u> 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 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경우 변경된 기일을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 ② (생 략)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 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u>가정폭력행위자의</u>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u>가정</u>
<u>폭력등행위자를</u>
<b>.</b>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u>가정폭력등행위자</u>
나
가정폭력등
<u>행위자</u>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b>(4)</b>		(E)	(생	략)
(4)	•	(S)	(/)	4)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u>가정폭력행위자의</u> 성행, 습벽 (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할 수 있다.
  - 1. <u>가정폭력행위자가</u> 피해자 또 1.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② (현행과 같음)
③
<u>가정폭력등행위자</u>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1 기자포러드체이키기.

- 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u>가정폭력행위자가</u>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 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u>가정폭력행위자가</u>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 사의 제한
- 4. ~ 8.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u>가정폭력행위자</u>,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u>가정폭</u>

2.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3.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4. ~ 8. (현행과 같음)
4. ** 6. (원행과 끝름)       ② · ③ (현행과 같음)
4
<u>가정폭력등행위자</u>
5
가정폭력

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 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 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 은 <u>가정폭력행위자에</u>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u>가정폭</u> 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고 한 물건으로서 <u>가정폭력행</u> 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 다.
-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수있다.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6)	<u>등행위자의</u>
⑥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제42조(몰수) <u>가정폭</u> 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 죄에	·
제42조(몰수)	<u>가정폭력등행위자에</u>
제42조(몰수)	
	·
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 죄에	
<u>최에</u>	
행위자 외의	
	<del></del> .
<u>행위자에</u>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u>행위자에</u> 	
<u>행위자에</u> 	
<u>행위자에</u> 	
	가정폭력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u>행위자에</u>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검사, <u>가정폭력행위자</u>, 법 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 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 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 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 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u>가정폭력등행위자</u>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u>가정폭력등행위</u>
자가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 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 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u>가정</u>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u>가정</u> 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 다만, <u>가정폭력행위자가</u> 지 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 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u>가정폭력행위자에게</u>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 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u>가정폭력행위</u> <u>자가</u>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 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 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 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 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u>가정</u>
<u>폭력등행위자는</u>
<u>가정폭력등행위자가</u> -
 ③ <u>가정폭력등</u> 행위자가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에는 검사, <u>가정폭력행위자</u>, 법 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 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 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u>가정폭력행위자의</u> 행위 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생략)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u>가정폭력등행위자</u>     2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할) ①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하나 ①
월) ①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 (청체코 가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친권자인 <u>가정폭력행위자의</u>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 한
- 5. <u>가정폭력행위자의</u>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② ~ ④ (생 략)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u>가정폭력행위자를</u> 상대방 당 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

1. ~ 3. (현행과 같음)
4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5. <u>가정폭력등행위자의</u>
② ~ ④ (현행과 같음)
5
1. <u>가정폭력등행위자를</u>

- 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 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 3. (생략)
- ⑥ (생략)
-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 략)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u>가정폭</u> <u>력행위자가</u> 그 결정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 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1. <u>가정폭력행위자</u> 또는 피해자 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 2. (생략)
-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 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 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

2.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정폭력</u>
<u>등행위자가</u>
제55조의6(병합심리)
 1. 가정폭력등행위자
1. <u>/   0 7 7 0 0 11/1</u>
2. (현행과 같음)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제57조(배상명령) ① (생 략)
  -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u>가정폭력행위자와</u>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있다.
  - ③ (생략)
-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 ④ (생 략)
  -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 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u>가정폭력등행위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배상명령) ① (현행과 같
<u>ㅇ</u> )
②
가정폭력등행위자와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가정폭력행위자와</u>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60조(불복) ① · ② (생 략)

- ③ <u>가정폭력행위자는</u>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 ⑤ (생 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가정폭력행위자는</u>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u>가정폭력행</u>
-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u>가정폭력행</u> 위자

<u>가정폭력등행위자와</u>
제60조(불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폭력등행위자는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 63조(모오서군 등의 물이앵쇠) (1)
 가정폭력등행위자는
<u>.</u>
1
 가정폭력등
<u>기 6 기 기 이 기 기 이 기 기 이 기 기 이 기 기 이 기 기 이 기 기 이 기</u>
2
<u>가정폭력등</u>
행위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u>가정폭력행위자는</u>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의 죄를 범한 <u>가정폭력행위자</u>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생 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u>가정폭력범죄를</u>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사람
- 2. (생략)

2
가정폭력
<u>등행위자는</u>
3
<u>가정폭력등행</u>
<u>위자는</u>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
1
<u>가정폭력 또는</u>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를
2. (현행과 같음)